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83
------------	-----

2019년 8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2일,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8월 2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된 바,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명문화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임

####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 11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7. 30 ~ 2019. 8. 6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수정가결
  -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음주운전 점검은 단편적인 방법이므로 다방면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를 ‘적극 노력해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매년 상·하반기마다 음주운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임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 및 점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를 통한 음주운전의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21조제12항1)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도록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제1항제9호2)에서는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3)를 근거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sup>4)</sup>의 가·감점 평가 중에 “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주운전관리”<sup>5)</sup>항목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동 매뉴얼 평가지표 이용패적성 분야에서는 버스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횡단보도 일시정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점검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등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시내버스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점검사항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관리로 시내버스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 4개 분야(1.안전성 향상, 2.이동편의성, 3.이용패적성, 4.지속가능성)의 25개 항목을 포함하는 평가지표와 가·감점 평가를 토대로 버스회사에 성과이윤 등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안전 운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음

5)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가·감점 항목 평가 중, 감점항목 9번 음주운전의 관리, 점수(-300)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안전운행 방안)</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내버스 <u>난폭운전</u>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u>교통사고</u>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p>	<p>제11조(안전운행 방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음주운전</u> 및 <u>난폭운전</u>----- -----, ----- <u>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u> ----- ----- -----.</p>